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3. 6. 9(금) 10:00

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동·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동·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52호
- 나. 제 출 자 : 이인식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5. 31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5. 31.

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」의 제정에 따른 내용 정비 및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을 반영하여,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체계적·효율적 추진을 통해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(안 제4조)
- 다. 시행계획의 수립 및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(안 제5조 ~ 안 제12조)
- 라. 사업비 지원 및 2차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(안 제13조 및 제14조)
- 마. 관련정보의 제공 및 비밀준수 의무(안 제15조 및 안 제16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- 1)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4조
 - 2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: 2023. 6. 1. ~ 2023. 6. 7.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전부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 등 정책 여건을 반영하고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1)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(안 제1조 ~ 제3조)

- 제명 변경

: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2)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(안 제4조)

3) 시행계획의 수립 등(안 제5조 ~ 안 제12조)

4) 사업비 지원 및 2차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(안 제13조 및 제14조)

5) 관련정보의 제공 및 비밀준수 의무(안 제15조 및 안 제16조)

다. 검토의견

-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, 가정폭력 관련 강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폭력 예방 및 안전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종합적 체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임

- 여성보호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지원 및 시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,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3조, 제4조와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,
-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체계적 제도 구축 및 시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은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86호, 2018. 12. 24., 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,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